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. 6. 21 선고 2022가단6798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

피고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2023. 5. 10.

판결 선고2023. 6. 21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4. 14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2. 4. 14. 접수 제73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D 등에 대한 소송

원고는 E조합, D, F, G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29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.

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'원고와 E조합, D 등 사이의 2013. 10. 2. 약정에 따라 E조합, D 등이 2020. 9. 21. 원고에게 984,586,927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'고 판단하여, 2022. 11. 23. "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,586,927원 및 그중 551,001,800원에 대하여 2022. 7. 19.부터 2022. 11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, 433,585,127원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2022. 4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, 피고 F, D, G은 2022. 4. 19.부터 2022. 11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(광주고등법원 2022나21438호, 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다.

E조합, D 등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2다310283호로 상고하였으나, 2023. 4. 13. 상고가 기각되었다.

나. D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

D는 2022. 4. 14.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73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경료하여 주었다.

다. D의 재산상태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, 2, 4호증(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광양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부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성립되어 있었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,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, 아울러 D에게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,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

이에 대하여 피고는 H에게 200,000,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, 그 중 잔액 150,000,000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, H의 모친 I으로부터 광양시 J대 411.4m² 1) 중 1/2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고,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, D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그가 선의라는 사실,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(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, 즉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

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근저장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곽희두

별지

1) 피고와 I이 각 1/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, 그 중 1/2 지분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임.